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29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2년 4월 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직원은 상위 법령에 맞게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며,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수정의 주요내용

- 의회 교육연수의 목적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관련해 직원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의정 전반에 관한”을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  
한”으로 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하거나 그 역량을 고양 및 지원할  
수 있는”을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를 “근로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심의·자문 및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5명”을 “15명”으로 하며, “10명 이내, 의원”을 “5명 이내, 의원”으로 하고, “10명 이내, 그”를 “5명 이내, 그”로 하며, “10명 이내의”를 “5명 이내의”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한다.





회”라 한다) 안팎에  
서 의원의 교육연  
수 기회가 자유롭  
고 충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  
-----  
-----  
-----  
-----.

③·④ (현행과 같  
음)

⑤ 의장은 직원 등  
의 의정 전반에 관  
한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⑥ 의장은 의회 교  
육연수를 효과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의원 의정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  
그램을 개발·시행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  
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  
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  
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  
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  
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  
정활동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도록 하  
기 -----  
-----.

② -----  
-----  
-----  
-----  
서울특별시의회역  
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

③ -----  
-----  
----- 센  
터-----  
-----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p>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돼야 한다.</p>	<p>-----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3. <u>의원역량개발센 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 한 사항</u></p>	<p>3. <u>센터</u>----- ----- -----</p>	<p>(개정안과 같음)</p>
<p>4. ~ 8. (생략)</p>	<p>4. ~ 8.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 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u>) &lt;신설&gt;</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 구성·운영</u>) ① 의장은 의원 및 직 원 등의 교육연수 에 대한 <u>심의·자 문 및 교육연수 관 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u>서울특별시의 회 교육연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u></u></p>	<p>제8조(<u>교육연수위원 회 구성·운영</u>)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자문하기</u> ---- ----- ----- <u>의회</u> --- ----- -----</p>

영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4. (생략)

② 위원회는 -----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삭제)

1. ~ 4. (삭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장(이하 “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을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을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원 교육연수”를 “의회 교육연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연수위원회)”를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의”는 “의원 및 직원 등의”로 하며, “의회 의원”을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제8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3명 이내, 의원”을 “5명 이내, 의원”으로 하며, “3명 이내, 그”를 “5명 이내, 그”로 하고, “3명 이내의”를 “5명 이내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1조 중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의회 교육연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u> <u>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u> <u>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u> <u>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u> <u>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u> <u>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u> <u>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서울</u> <u>특별시의회의의원(이하 “의원”이</u> <u>라 한다)에게 적용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조(기본원칙) ① <u>서울특별시의</u></p>	<p><u>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u> <u>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u> <u>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u> <u>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u> <u>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u> <u>다.</u></p> <p>제2조(적용범위) ----- <u>다음</u> <u>각 호의 대상</u>----- -----.</p> <p>1. <u>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이하</u> <u>“의원”이라 한다)</u></p> <p>2.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u> <u>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u> <u>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u> <u>특별시의회의의장(이하 “의장”</u> <u>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u> <u>(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① <u>의장</u>-----</p>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  
-----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  
-----  
-----  
-----  
-----.

② ----- 의회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

② -----  
-----  
-----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③ -----  
-----  
----- 센터-----  
-----  
-----  
-----  
-----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  
----- 의회 교육연수 -----  
-----  
-----  
-----  
-----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③·④ (생략)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후단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센터-----  
-----  
--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  
--- 의회 -----  
-----  
-----.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15명 -----  
-----  
-----  
----- 5명 이내, 의원 5명 이내, 그 -----  
----- 5명 이내의 -----  
----- .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④ · ⑤ · ⑥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③ · ④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  
----- 의회 교육연수  
-----  
-----.